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
----------	-----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제1항제2호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공직자윤리법 제3조 단서의 내용 반영)
- 조례안 제3조제2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사항을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정한 사항과 일치하도록 개정
- 조례안 제10조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개정(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제1항의 사항 반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09. 23. ~ 2015. 10. 1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는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제10조 중 “정례회에”를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창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u>풍부한 자</u> 중 3명</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제3조(기능) ① (생략)</p> <p>② <u>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u></p> <p>1. <u>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u></p> <p>2. <u>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u></p> <p>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p>	<p>제2조(구성) ① ----- ----- ----- ----- -----.</p> <p>1.----- -----<u>풍부한 자, 시민단체</u> <u>(「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u> <u>에서 추천한 사람--</u></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는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u></p> <p>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p>

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례회 개최 전까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기획감사실장 김 진 영
연 락 처	(033)330-2206

관계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생략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 8. 생략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20조의2 (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